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병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160

발의연월일 : 2020. 12. 07.

발 의 자:이병훈·이상헌·홍성국

이광재 · 송갑석 · 김승원

김종민 • 이성만 • 남인순

전재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에 대해 201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현재는 호텔업에 대한 재산세 관련 지원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.

그런데 코로나-19 감염증 확산 등 경영 악화 요인으로 호텔업계가 지속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어, 향후 호텔업 서비스 질 저하 및 우리나 라 관광숙박업 시장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 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호텔업계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 지원의 일환으로 호텔업에 사용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하려는 것임(안 제54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4조제2항 중 "외국인투숙객 비율"을 "매출액"으로, "2014년"을 "202 1년"으로, "특1등급"을 "5성급"으로, "특2등급"을 "4성급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) 제5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4조(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	제54조(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
특례) ① (생 략)	특례) ① (현행과 같음)
②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호	②
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<u>외국인</u>	<u>매출액</u>
<u>투숙객 비율</u> 등 대통령령으로	
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	
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「관광	
진흥법」 제3조제1항제2호가목	
에 따른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	
는 토지(「지방세법」 제106조	
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로	
한정한다) 및 건축물에 대해서	
는 <u>2014년</u> 12월 31일까지 재산	<u>2021년</u>
세의 100분의 50(「관광진흥	
법」 제19조에 따른 관광숙박	
업의 등급이 <u>특1등급</u> 및 <u>특2등</u>	<u>5성급</u> <u>4성급</u>
<u>급</u> 인 경우에는 100분의 25)을	
경감한다.	
③ ~ ⑥ (생 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